

# 일제강점기 규장각 書目의 ‘記錄類’ 형성 과정

민회수\*

1. 머리말
2. 규장각 書目 내 ‘系譜 · 記錄類’ 분류의 제정 배경
  - 1) 1912년 朝鮮總督府 取調局의 규장각 도서정리사업 원칙 제정과 그 내용
  - 2) 史部의 ‘系譜 · 記錄類’ 신설과 ‘조선왕조 · 왕실 관련 자료군’의 四部體制 편입
3. 계보 · 기록의 분리와 ‘조선왕조 · 왕실 관련 자료군’의 해체
4. 개항기~대한제국기 공문서류의 기록류 편입
5. 맺음말

## 1. 머리말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약 15만 책의 고도서가 소장되어 있으며, 이들은 經 · 史 · 子 · 集의 四部 체계 하에 그 하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규장각 도서는 1776년에 건립된 규장각에 소장되었던 도서 뿐만 아니라 弘文館, 集玉齋, 侍講院, 北漢山 行宮 및 여러 史庫들 등에 있던 서적들이 총망라된 것으로, 이 작업은 대부분 대한제국 말기에서 일제강점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取調局과 參事官分室, 그리고 京城帝國大學 부속도서관의 규장각 도서 정리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그 실체가 상당히 밝혀진 바 있다.<sup>1)</sup>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1) 金泰雄, 1993 「1910년대 前半 朝鮮總督府의 取調局·參事官室과 ‘舊慣制度調查事業’」『奎章閣』16; 1995 「日帝 强占 初期의 奎章閣 圖書 整理 事業」『奎章閣』18; 2008 「日帝强占期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이러한 규장각 도서의 정리과정에서 생산된 여러 書目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규장각 도서분류체계에는 없는 세부항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史部 하의 ‘記錄類’ 분류항목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당시 서목과 현재 분류체계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 항목이 특히 눈길을 끄는 이유는 다른 분류와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 분량이 많기 때문이며, 아울러 이러한 현상이 조선본(한국본)에만 해당되고 있기 때문이다.<sup>2)</sup> 이 史部-記錄類는 전통시대의 서목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항목인데, 그 형성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sup>3)</sup>

한편 기록류 분류에 속한 서적들을 살펴보면, 개항기~대한제국기에 생산된 각종 공문서류나 量案, 成冊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문서류는 주제별로 분류하는 도서와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기에 생산기관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이들을 주제분류인 史部 체계에 편입시켜서 결과적으로 원 질서를 훼손시켰다는 비판의 제기와 더불어 본래 질서를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다.<sup>4)</sup> 하지만 이들 문서류가 규장각도서로 유입되는 구체적인 시기와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주는 사료가 존재하지 않는 한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서목에서 이들 자료들의 편입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 과정의 대강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京城帝國大學의 奎章閣 관리와 所藏 資料 활용』『奎章閣』33.

2) 서목의 ‘기록류’ 항목과 관련된 세부적인 수치는 뒤에 제시되는 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할 예정이다.

3) 다만 김태웅의 연구에서 이 기록류에 대한 제국기 공문서가 포함된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김태웅, 2007 「奎章閣 地方官衙 記錄物群」의 構造와 記錄物의 再整 方向』『奎章閣』31, 242면).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기록류’라는 분류 항목의 형성 배경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

4) 李相燦, 1997 「규장각 소장 자료의 公文書 分類圖章에 대하여」『書誌學報』20; 김태웅, 2007 앞의 논문; 박성준, 2008 「대한제국기 公文書의 편철과 분류」『書誌學研究』41; 2009 「통감부~일제 초기 갑오개혁과 대한제국기 공문서의 분류」『기록학연구』22.

본고에서는 ‘기록류’라는 분류 세목의 형성 과정과 더불어, 개항기 공문서류가 ‘기록류’에 편입되는 과정을, 일제강점기의 규장각 도서 정리 과정에서 생산된 주요 서목들과 연계시켜 추적해보고자 한다. 이는 규장각 도서에 있어서 현재진 행형인 기록물 분류 문제의 기원을 찾아본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 2. 규장각 書目 내 ‘系譜·記錄類’ 분류의 제정 배경

### 1) 1912년 朝鮮總督府 取調局의 규장각 도서정리사업 원칙 제정과 그 내용

한국병합 직전인 1908~1909년 사이에 규장각은 물론 홍문관, 집옥재, 시강원, 북한산 행궁 등의 도서 10만여 권이 통합되어 ‘帝室圖書’로 명명되었고, 이들의 서목으로 『帝室圖書目錄』(1909, 套25243)이 간행된 바 있다.<sup>5)</sup> 병합 이후 잠깐 동안의 李王職 관리기를 거쳐 이들 도서의 관리권은 1911년 8월에 取調國으로 인계되었다.

취조국에서는 새로 서고를 신축하면서 이를 ‘本庫’라고 칭하고 朝板(조선본) 도서를, 기존 宮內府 圖書課의 서고를 東·西·南·北의 4庫로 명명하고 唐板(중국본) 서적을 배치하였으며, 散佚缺損된 조판·당판서적 중 여분이 여럿인 것을 별도로 보관하기 위해 別庫를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규장각도서의 정리 사업을 진행하였다.<sup>6)</sup> 이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도서정리의 원칙을 새로 제정했다는 것이다. 이 새 원칙하에 1912년 3월경에 새로이 작성된 서목으로 조선판 목록으로는 『朝板圖書目錄』(奎26730·26729)과<sup>7)</sup> 『書籍目錄臺帳』(奎26768), 중국판 서적 목록으로는 『唐板四部假目錄』(奎26767)과 『唐板圖書目錄』

5) 徐榮姬, 1994 「통감부 시기 일제의 권력장악과 규장각 자료의 정리」 『奎章閣』 17, 108-110면.

6) 金泰雄, 1995 앞의 논문, 178면.

7) 둘을 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 내용은 같되奎26729본은 책수는 2책이지만 전체 내용은奎26730 쪽이 많다. 그리고 둘 다 붉은 색으로 수정된 부분이 있지만奎26729 쪽이 훨씬 많으며,奎26730본에서 붉은 색으로 수정 표시된 부분 중에서奎26729에 반영된 부분이 간혹 발견된다. 따라서奎26730이 상대적으로 먼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奎26765) 및 『唐板書籍目錄』(奎26756)이 있다.<sup>8)</sup> 이들 서목 제작의 토대가 된 8개조로 이루어진 도서정리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9)</sup>

- ① 본국(취조국-필자 주) 서고의 도서는 원래 규장각의 圖書課, 記錄課 및 경복궁의 集玉齋, 春坊과 더불어 江華府 史庫 등에 소장되었던 것을 수집한 것으로, 이를 朝鮮板과 支那板의 두 종류로 구분하고 각각 經·史·子·集의 4부로 크게 나눈 뒤, 다시 이하의 표와 같이 분류별로 나눔으로써 정리와 검색에 편리하게끔 한다.<sup>10)</sup>

部別	類別
經部	四書·五經 / 子彙
史部	系譜·記錄 / 歷史·雜史 / 政治·法律 / 傳記·雜記 / 地理 / 年表·目錄
子部	儒·道·佛 / 兵·農·醫 / 天文·算數 / 類書 / 叢書 / 雜書 / 藝術
集部	別集 / 總集 / 修辭

- ② 앞 표의 분류별 구분에 따라 도서목록을 작성함에 있어 먼저 조선판부터 착수 하며, 여기서 조선판이라고 함은 비단 조선본 뿐만 아니라 支那本의 麻刻本 혹은 寫本까지도 포함한다. 생각건대 시대의 嗜好와 문학의 경향을 연구함에 있어 다소 참고할 바가 없지 않을 것이다.<sup>11)</sup>

8) 『唐板史部假目錄』의 경우 제목에 '假'자가 붙어 있고 다른 두 서목과는 달리 별도로 제작된 표지 없이 본문에 사용된 폐지에 붉은 색으로 제목을 수기해 넣은 점, 본문에 붉은 색으로 수정·첨가한 부분이 대단히 많은 점 등으로 볼 때 체계적인 목록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의 결과물로서 가장 먼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唐板書籍目錄』과 『唐板圖書目錄』의 경우 기본적으로 양자가 내용은 일치하지만, 『唐板書籍目錄』은 『唐板圖書目錄』에는 없는 붉은 색으로 부기해 넣은 첨가·수정사항이 대단히 많이 발견된다. 아울러 이 서목에서 특기할 점은, 經·史·子·集別 부류 목차의 제목이 經部의 경우 '唐板經部目錄 稿本 原本', 史部는 '唐板史部假目錄 原本' 등으로 '假', '稿本', '原本' 등의 단어에서 교정을 목적으로 만든 가목록임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唐板書籍目錄』이 상대적으로 『唐板圖書目錄』보다는 먼저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9) 이하의 내용은 『書籍目錄臺帳』의 권두에 '緒言'이라는 제하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1912년 3월에 조선총독부 취조국 圖書掛에서 작성하였다. 각 항목의 앞에 나오는 번호는 필자가 임의로 부여한 것이다. 각 항목별로 본문에 번역문을, 각주에 원문을 부기하며, 각주의 출전은 생략한다.

10) “一 本局書庫の圖書は元奎章閣の圖書課、記錄課及び景福宮の集玉齋、春坊並に江華府の史庫等に藏せしものを蒐集したるものにして之を朝鮮板、支那板の二種に分ち各々經史子集の4部に大別し更に之を左表の如く類別し以て整理と検索に便せり”

11) “一 前表の類別に依りて圖書目錄を調製するに當り先づ朝鮮板より着手せり而して茲に朝鮮板と稱するは必ずしも朝鮮本のみに非ずして支那本의 麻刻若くハ寫本に係るもののも含

- [3] 종류별 목록은 시대순을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일일이 살피는 것은 자못 시일을 낭비하여 단기간에 작업을 완성시킬 수 없다. 게다가 가능한 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착오를 면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저자의 연대도 태어난 해에 근거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登科年이나 没年에 근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하나로 정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이것은 해제 작업으로 미룬다.<sup>12)</sup>
- [4] 史部의 系譜·記錄類는 원래 奎章閣 記錄課에 소장되었던 약 10,000책과 江華史庫로부터 그곳으로 이관된 약 3,000책을 합쳐서 가능한 한 동일한 종류를 동일한 欄行에 배열하였다. 따라서 傳記·雜記類와 간혹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검색상의 편의에 따라 이 둘을 구별한다.<sup>13)</sup>
- [5] 종래 도서의 제목을 기록할 때 종종 약칭을 사용하였으니, 가령 『孟子諺解』는 ‘孟解’로, 『續資治通鑑綱目』은 ‘鑑續’으로 붙인 것과 같은 경우이다. 또 『荷谷集』이라는 제목의 책은 〈실제로는〉 문집이 아니라 『朝天記』이다.<sup>14)</sup> 이 같은 부유들이 적지 않으므로, 본 목록에서는 가능한 한 이들을 바로잡는다.<sup>15)</sup>
- [6] 『破閑集』, 『補閑集』과 같은 것들은 子部에 속하는 雜家類임에도 集部에 배열한 것은 〈이 편이〉 耳目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또 風刻本 중에서 『大學衍義』와 같은 경우 역시 子部에 속하는 儒家類이나 〈마찬가지 이유로〉 經部의 『大學』와 같이 배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검색상의 편리함을 위주로 하고 반드시 『四庫全書』의 분류에 구애되지는 않도록 한다.<sup>16)</sup>

めり蓋し時代の嗜好と文學の傾向を研究するに於て亦た多少の参考と爲るべきもの無くんはあらす”

- 12) “一 類別の目録は時代順を趁ふて序列すべきは當然なれとも一々之を考覈するは頗る時日を費し短期間に速成すべきにあらず而も可能的注意を拂ひしと雖も固より顛倒錯置を免れず且著者年代も或は生年に據るべきものあり或は登科年に據るべきものあり或は沒年に據るべきものあり一定すること難し要ハ之を解題に譲れり”
- 13) “一 史部の系譜記錄類は元奎章閣記錄課に藏せし約一萬冊と之に江華史庫より移せし約三千冊とを合し可成同一種類を同一欄行に列したるものなり故に傳記雜記類と或は重複するの嫌あれとも検索上の便宜に依り彼此を區別せり”
- 14) 『하곡집』은 저자인 許筠(1551~1588, 許筠의 형)의 증손 墉가 1707년(숙종 33)에 간행한 것인데, 실제로 허봉의 글을 모아놓은 문집도 있지만(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3644-9 등. 단 현재 검색상 서명은 ‘荷谷先生詩鈔’로 되어 있다), ‘하곡집’이라는 같은 표제를 가지면서도 실제 그 내용은 문집이 아니라 허봉이 1574년(선조 7) 書狀官으로 중국에 다녀 오면서 기록한 일기인 「조천기」와 「過江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규장각 소장본 奎4256 등. 역시 현재는 서명이 ‘荷谷先生朝天記’로 다르게 잡혀 있음). 본문에서 지칭하는 경우는 아마도 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15) “一 従來圖書の題目を書するに往々略稱を用ひ假令ハ孟子諺解を孟解と題シ續資治通鑑綱目を鑑續と題せうか如き或は題シて荷谷集と云ふもの集に非すして朝天記なるか如きの類歎からす本目録にハ可成之を訂正せり”

- ⑦ 조선에서 유래한 저작들은 漫錄·隨筆의 부류가 많으며, ‘政法’과 비슷한 ‘記錄’이라던가 ‘叢書’와 비슷한 ‘雜書’ 부류가 있는 것과 같이 體裁가 정연하지 못하고 제목과 실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거의 어떤 부류에 집어넣어야 하는지 판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도서의 내용을 짐작하여 편의상 이를 종류별로 구분한다.<sup>17)</sup>
- ⑧ 본 목록은 도서정리 작업에 처음着手하여 단기간 짧은 시간 동안에 만든 것 이기에 누락과 오류를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 또 類別 명칭도 임시로 부여한 것이므로 뒷날을 기다려 다시 고증해야 할 바가 있을 것이다.<sup>18)</sup>

상기 나열된 항목들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②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조선본과 중국본의 구분시 논란이 되는 경우(중국의 도서를 조선에서 간행)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sup>19)</sup> 아울러 ⑤에서 는 향후 시행될 도서정리 작업에서 서지사항 파악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질 것임이 시사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원칙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역시 도서의 분류체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열개가 ①에서 표와 더불어 공개되고 있으며, ⑥에서는 『四庫全書』의 분류에 얹매이지 않고 겸색상의 편의를 위주로 한다는 도서 분류의 기본 원칙을, ⑦에서는 도서분류시 생기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처리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⑧에서는 四部 하 세부 분류항목 명칭의 오류 및 향후 개정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 16) “一 破閑集補闕集の如きハ子部に屬する雜家なり然れども之を集部に列せしハ耳目に慣れたるを以てなり或ハ翻刻本に於ける大學衍義の如きも亦た子部に屬する儒家なり然れども之を經部の大學生と同列せり要するに検索上の便利を主とし必ずシも四庫全書の分類に拘泥せず”
- 17) “一 由來朝鮮の著作は漫錄隨筆の類多く政法に似て記錄なるか如き或は叢書に似て雜書なるか如き體裁相具らす名實相適はず殆ど何れの部類に屬すへきやを判シ難きものあり此の如きハ各書の内容を酌酌シ便宜之を類別せり”
- 18) “一 本目録は圖書整理の一着手として短期忽卒の間に之を調製せしものなれば疎漏誤謬を免れざるもの多シ且類別の名稱も假に之を体セシものなるを以て他日を待つて更に之を考訂する所あるヘシ”
- 19) 이렇게 중국 서적이라도 조선에서 간행했으면 조선본으로 보는 원칙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실제 일제강점기 규장각도서의 정리과정에서 제대로 관철되지는 못한 듯하다. 현재 규장각 소장 도서들 중 중국본을 의미하는 ‘奎中’ 기호를 부여받은 것들 중에서 상당수가 조선에서 간행되었다는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④로서, 새 분류체계 하에서 史部 하에 설정된 ‘系譜·記錄類’라는 분류 소항목의 구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四部 하의 한 분류항 목을 설명하는 데 한 조항 전체를 할애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조국의 도서분류 체계 개편에 있어서 이 항목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sup>20)</sup>

2) 史部의 ‘系譜·記錄類’ 신설과 ‘조선왕조·왕실 관련 자료군’의 四部體制 편입  
취조국이 새로 제정한 도서분류체계는 그 원칙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經·史·子·集이라는 기본적인 분류들은 유지하되 『四庫全書』 체제와는 다소 차별성을 두며 구성되었다. 8개조 원칙의 제①항에서 도표로 언급되는 새 분류체계를 1909년에 간행된 『帝室圖書目錄』에 나타난 그것과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帝室圖書目錄』(1909)과 『書籍目錄臺帳』(1912)의 도서분류체계 비교

四部	帝室圖書目錄	書籍目錄臺帳	四部	帝室圖書目錄	書籍目錄臺帳	
經部	易	四書·五經	子部	儒家	儒·道·佛	
	書			兵家		
	詩			法家	兵·農·醫	
	禮			農家		
	春秋			天文·算法	天文·算數	
	孝經	子彙		術數		
	五經總義			藝術	類書	
	四書			譜錄		
	樂			雜家	叢書	
	小學			類書		
史部	正史	系譜·記錄	集部	小說家	雜書	
	編年			釋家		
	紀事本末			道家	藝術	
	別史	政治·法律		楚詞		
	雜史			別集		
	詔命·奏議	傳記·雜記		總集		
	傳記			詩文評		
	地理			詞曲	修辭	
	政書	年表·目錄				
	史評					

20) 아울러 『서적목록대장』의 가장 앞부분에 보면, 8개조에 걸친 緒言이 시작하기 전에 별도로 ‘史部’라는 제하에 史部·계보·기록류에 수록된 선원록이나 形止案 및 의궤 등과 관련한 여러 범례를 붉은 색 펜으로 기재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한 눈에 살펴봐도 세부항목의 측면에서 새로운 체제가 이전의 체제에 비해 많은 통폐합과 단순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經部의 경우 기존 체제에서는 詩經·書經·周易·春秋 등 五經 관련 서적들이 각기 따로 분류항목을 형성한 반면, 신규 체제에서는 이들이 四書와 더불어 모두 통폐합되는 등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서적목록대장』을 위시한 신규 체제하의 서목들에서는 '4서5경류'라는 단일항목 하에 5경보다 4서가 먼저 나오고, 결국 4서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먼저 등장하는 『大學』 관련 서적부터 서목이 시작되고 있다. 이는 『제실도서목록』뿐 아니라 전통 서목들에서도 5경 중 가장 오래된 『周易』과 관련된 '易類'가 제1항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서목들에서 『주역』 관련 서적들이 가장 앞부분에 위치한 것과 대조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史部 아래에 '系譜·記錄類'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다는 사실이다. 앞서 취조국의 8개조 도서분류체계 원칙 중 제④항에서 이 분류항목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항목에 속하는 서적들의 출처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해당 항목을 신설한 근거나 배경 등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취조국의 분류체제와 과거 여타 서목들의 그것을 비교함과 더불어 계보·기록류에 배치된 도서들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추정해볼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에 있어 기록물은 經·史·子·集 분류의 도서와는 다르게 취급되었으며, 따라서 '기록류'라는 분류항목은 전통 서목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상기의 『제실도서목록』에서도 해당 분류는 없다. 대신에 대한제국 宮內府에서는 1909년 11월에 『宮內府記錄總目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청구기호: K2-5130)이라는 별도의 목록집을 제작하여 기록물을 儀軌類, 謄錄類, 日記類, 公文類, 雜書類의 5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sup>21)</sup>

이 『궁내부기록총목록』에 기재된 서적들 중 일부가 '계보·기록류'에 편입된 것이 확인된다. 하지만 전부 다 수록된 것은 아니며, 公文類와 雜書類는 제외되었고 儀軌·謄錄·日記類 중 일부만 기재되었다. 따라서 이 항목이 기존의 기록류 목록에 대한 전면적인 대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1) 김태웅, 2007 앞의 논문, 241면.

아울러 또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系譜’와 ‘記錄’이 통합되었다는 것으로, 항목의 명칭만으로는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항목 내 기재된 서적의 내용을 살펴서 이 분류항목 형성의 배경을 파악할 수 밖에 없다. 『서적목록대장』의 史部-系譜·記錄類에 기입된 서적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sup>22)</sup>

〈표 2〉 『書籍目錄臺帳』(1912)의 史部-系譜·記錄類 수록 도서 일람

세부 분류	도서수록 내용	도서건수
『璿源錄』·『璿源系譜記略』·『璿源續譜』 등 선원록 관련 부류	『璿源錄』·『璿源系譜記略』·『璿源續譜』 등 선원록 관련 부류	141
	『太祖~哲宗實錄』 등 實錄 및 事實·紀事 등 관련 부류	33
	『宮內府日記』·『日省錄』·『東宮日記』 등 각종 일기 부류 (誌狀, 紿音, 行狀 등 일부 포함)	107
儀軌類之部	『璿源譜略修正儀軌』에서 『國朝寶鑑儀軌』까지 각종 의궤류	547
謄錄之部	『訓局謄錄』에서 『故事謄錄』까지 각종 등록류	147

수록 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눈에 띠는 부분은,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실 족보인 『璿源錄』 관련 부류라든가, 아니면 『朝鮮王朝實錄』 등과 같이 대부분 조선왕조 및 왕실과 관련된 서적들이라는 사실이다. 기록류 목록인 『궁내부기록총목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일기, 의궤류들 역시 대체로 왕실 관련 도서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일기류 항목에서 간혹 발견되는 誌狀, 紿音, 行狀들도 대체로 왕실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이를테면 행장의 경우 총 3 종이 있는데, 『仁祖行狀』, 『孝宗行狀』, 『景宗行狀』 등 모두 국왕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등록류 역시 그 중에서 왕실 관련 책들이 심심찮게 발견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선왕조·왕실 관련 도서들은 이전의 서목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을까? 전통적으로 왕실 관련 서적들은 經·史·子·集의 분류체계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정조대 규장각의 조선본 서적 목록들을 살펴보면, 조선왕실 관련 자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御製·御筆類

22) 儀軌類之部 앞의 3개 항목은 원래 소분류가 없으며, 필자가 임의로 도서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였다.

나 御定類 및 璞譜·璞牒類 등의 기재난이 四部 분류의 앞(『西序書目籤錄』 및 『西序書目草本』),<sup>23)</sup> 혹은 뒤 [『西庫藏書錄』(奎7717)]에 따로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이후 고종대에도 지속되었다.<sup>24)</sup> 閣古觀 書庫, 摘文院의 藏書 체계가 해체된 뒤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奎章閣書目』(규장각본:奎11706, 장서각본: K2 4636) 및 『奎章閣樓上庫冊目錄』(K2 4634-1, 2) 등에서는 분류방식의 기준이 四部가 아니라 書架로 바뀌었지만, 이러한 체계 하에서도 상기의 왕실자료들은 일정한 서가에 한데 모여 있었다.<sup>25)</sup>

그러던 것이 『제실도서목록』의 작성과 더불어 일단 御製·御筆類와 御定類, 및 編音 등의 분류항목이 사라지면서 四部의 하위항목들에 분산되었다.<sup>26)</sup> 그런

〈그림 1〉『書籍目錄臺帳』(奎26768) 중  
吏部-系譜·記錄類의 『璿源錄』 관련 도서 수록 부분

23) 이 두 책의 원본은 현재 모두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西序書目籤錄』은『奎章閣』12집에 전문이 영인되어 있으며,『西序書目草本』의 경우 1917년에 마에마 쿄사쿠(前間恭作)가 등사한 것이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청구기호: 화한서분류 0460 206). 이들 서목들의 판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南權熙, 1983『奎章閣 西唐와 그 書目分析』,『奎章閣』7, 144-158면 참조.

24) 『閣古觀書目』(K2-4654), 『西庫書目』(K2-4963), 『摛文院書目』(K2-4657-1) 등 참조(한국 학술안양구워 장서각 소장).

25) 자세한 내용은 南權熙, 1983 앞의 논문, 158-163면 참조.

데 이 시기는 일본 통감부 치하로 아직 형식적으로 대한제국 황실이 존속하였던 바, 황실의 족보에 해당하는 선원록 류에 대해서까지 손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제실도서목록』에서 아예 배제되었는데, 병합 이후 史部 아래에 새로운 細目이 만들어지면서 經·史·子·集 체제 내로 편입된 것이다.<sup>27)</sup>

왕조실록의 경우는 조선왕조가 존속하는 한 아예 전통 서목에서는 수록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역시 조선왕조의 멸망을 계기로 四部體制 내로 편입이 가능해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밖에 의궤류와 일기류의 경우, 기존에는 기록물로 관리하던 것들 중에서 조선왕실과 관련이 깊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골라 편입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28)</sup>

결국 취조국의 새로운 도서분류체계에서 탄생한 史部-系譜·記錄類 항목은, 전통시대에는 아예 서목에 등재되지 않거나 四部 분류와는 별도로 취급되던, 혹은 아예 목록 자체가 별도로 존재하던 조선왕조·왕실관련 자료들을 한데 묶어 經·史·子·集의 분류체계 속에 편입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9)</sup> ‘계보’(선원록)와 ‘기록’(왕조실록, 일기류, 의궤)의 어색한 만남은 이러한 맥락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이러한 추론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 것은, 이 하위분류가 중국본 기재 서목에는 없다는 점이다. 즉 취조국 제작 서목 중 중국판 목록인 『唐板四部假目錄』·『唐板圖書目錄』·『唐板書籍目錄』을 보면, 史部의

26) 실제로 『제실도서목록』을 살펴보면 御製·御筆類와 御定類 및 翰音 등이 주로 史部의 하위항목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7) 참고로 전통 서목에 ‘譜系類’(『서서서목첨록』·『서서서목초본』), ‘族譜類’(『서고장서록』) 등의 유사한 이름의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당연히 이는 왕실이 아닌 일반 족보를 그 수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재 도서의 수량도 많지 않다.

28) 따라서 계보·기록류에서 ‘기록’은 ‘기록류 전체’가 아니라 ‘조선왕실과 관련이 깊은 기록’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 항목에 『궁내부기록총목록』에 수록된 公文類와 雜書類가 제외된 것은 이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후술하겠지만 이 ‘기록류’ 항목의 성격은 ‘계보류’와 분리되면서 점차 변하게 된다. 하지만 적어도 처음 계보·기록류가 만들어질 때의 ‘기록’의 의미는 일반적인 기록물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29) 이렇게 일제가 조선왕실 관련 자료들을 四部 분류체계 속에 강제적으로 편입시켰다는 비판은 선행 연구에서 일찍이 제기된 바 있으며(이상찬, 2013 「朝鮮總督府의 “도서정리사업”의 식민지적 성격」 『한국문화』 61, 367-369면), 본고 역시 기본적인 논지는 이 연구에 착안하였음을 밝혀 둔다. 다만 여기에서는 취조국 체제의 계보·기록류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

분류가 歷史·雜史類에서 시작하고 있다. 계보·기록류 항목의 설정 자체가 조선 왕조 및 왕실관련 자료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니만큼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 3. 계보·기록의 분리와 ‘조선왕조·왕실 관련 자료군’의 해체

조선총독부 취조국은 도서정리체계의 개편까지 시도하면서 규장각 도서의 정리에 힘을 쏟았지만, 새로운 도서분류 원칙이 제정된 지 불과 한 달 만인 1912년 4월에 취조국이 해체되고 규장각도서의 관리 임무는 신설되는 參事官 分室로 이관되었다.<sup>30)</sup> 이 전환기에 간행된 주요 서목으로는 『朝鮮總督府圖書目錄(朝鮮板)』(1913년 4월 간행,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朝92-3)이 있다.<sup>31)</sup> 비록 시기상 간행 주체는 참사관 분실이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취조국에서 행한 규장각도서 정리작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목은 후술할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 및 그 補遺編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규장각도서의 서목 중 몇 안 되는 인쇄본이기도 하다.<sup>32)</sup>

이와 더불어 도서 관리의 인계과정에서 작성된 서목들도 눈에 띈다. 역시 1913년 4월경에 작성된 조선판 도서 목록인 『朝板部別目錄』(奎26742)과 중국본

30) 金泰雄, 1993 앞의 논문, 107-110면.

31) 같은 서명을 가진 책이 여럿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일단 조선총독부 보유도서 중 서양서나 일본서 등 규장각도서 이외의 책들에 대한 목록으로 작성한 것이 있는데(奎20302), 이것은 1911년 처음 발간한 이래 여러 차례 증보를 거쳤다. 이 서목이 인쇄본인 반면, 규장각에 소장된 同題의 필사본(奎26792)은 1914~1915년 사이에 참사관 분실에서 행한 도서정리사업의 과정에서 생산된 4종의 서목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다. 본문에 언급된 것까지 합쳐서 이를 세 서목은 제목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성격의 도서목록들이라고 할 수 있다.

32) 그런데 이 서목의 분류체계 중 본고에서 주목하는 부분인 史部의 계보·기록류 부분(본문의 <그림 2> 참조)은 『서적목록대장』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즉 여기에서는 이 항목이 빠진 채 일단 經·史·子·集의 세부 항목에 따른 서적들이 다 나열된 후 마지막에 史部-계보·기록류가 별도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비록 四部 분류에 포함은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왕실관련 자료군’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이 분류항목이 특별 취급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목록인 『唐板部別目錄』(奎26754)이 그것인데, 기본적으로 촬조국 체제의 분류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다만 책표지 안쪽에 당시 총독부의 서고별 서적 소장 수량의 현황을 기록한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이 특이한데,<sup>33)</sup> 이는 신설된 참사관 분실의 새로운 작업 착수를 위한 준비로서 촬조국에서 행했던 작업에 대한 마무리 정리로서의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된다.

〈그림 2〉 『朝鮮總督府圖書目錄(朝鮮板)』(1913)의  
史部-系譜·記錄類 시작 부분

33) 도서의 수량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金泰雄, 1995 앞의 논문, 179면의 〈表 3〉~〈表 5〉 참조. 이러한 도서 수량 통계는 앞에서 언급한 『朝鮮總督府圖書目錄(朝鮮版)』에도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중 『朝板部別目錄』을 보면 『서적목록대장』 등 취조국 체계 하에 서 작성된 서목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이 발견되니, 史部-계보·기록류 분류가 사라지고 없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분류항목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소속 서적들(선원록, 실록, 일기, 의궤 등)도 누락되어 버렸다.

이는 두 가지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하나는 당시까지 규장각도서에 편입되지 못했거나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史庫의 도서들이 합류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34)</sup> 즉 1914~1915년에 걸쳐서 오대산[『五臺山史庫藏書目錄』(奎26735), 『五臺山史庫圖書目錄』(奎26736), 『五臺山藏書目錄』(奎26737)], 태백산[『太白山史庫圖書目錄』(奎26738), 『太白山藏書目錄』(奎26739), 『太白山史庫藏書目錄』(奎26741)] 등지의 史庫에 소장된 서적들의 목록이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 아울러 1914년 8월에는 이들 사고에 소장된 의궤들의 목록인 『儀軌假扣』(奎26747)가 별도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왕실관련 자료군에 포함될 서적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상황이기에 서목에 기재하는 것을 보류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가지는 참사관 분실 하에서 다시금 도서 분류체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새롭게 만든 분류항목이 다시금 개편되는 체제 하에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기에 일단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참사관 분실에서는 당시 취조국에서 정한 분류체계를 다시금 재변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sup>35)</sup> 여기에는 종래의 분류와 세부항목 및 배치순서 등이 크게 달라져 혼란을 야기한다는 문제의식이 일정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圖書臺帳』(奎26781)으로, 서목 자체의 분류 항목은 없지만 가장 앞부분이 『周易』 관련 서적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분류 체계

34) 사실 『서적목록대장』의 말미에도 史庫 소장 도서들의 목록이 일부 기재되어 있다. 이는前述한 인쇄본인 『조선총독부도서목록(조선판)』(1912)에 반영되어 있는 바, 史部-계보·기록류의 하위에 『서적목록대장』에는 보이지 않는 ‘形止案類’ 항목이 상당한 분량으로 기재되어 있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5)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청구기호: 0500 70 1~3) 제1권의 〈九. 分室事務進行順序〉 중 ‘第一 図書ノ整理 - (二)部門別目錄ノ作成’ 참조.

가 일정부분 취조국 이전의 그것과 유사하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sup>36)</sup>

그런데 당시 참사관분실에서 분류체계 개편보다 더 집중하던 부분은 도서번호의 부여였다. 일단 『도서대장』에 참사관 분실에서 나름대로 분류체계에 따라 부여한 도서번호가 처음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곧이어 작성된 카드번호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 카드번호는 참사관 분실에서 일본 관변학자들에게 연구를 위한 열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카드에 부여된 번호로,<sup>37)</sup> 자연스럽게 그 배열순서는 이용의 편의상 당시 널리 쓰이던 일본어 음순인 ‘이로하(イロハ: 일본어의 가나 47자를 한 글자도 중복시키지 않고 사용하여 지은 노래)’로 기획되었다.<sup>38)</sup> 이러한 카드작성은 1914년 7월에 시작되어 이듬해 말이 되면 번호가 확정되는데,<sup>39)</sup> 이 카드번호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15년 2월에 작성된 『朝鮮圖書索引簿』(奎26779)에서이다. 여기서는 앞서 도서대장에서 처음 부여된 번호가 ‘도서번호’로, 카드번호는 ‘카드번호’로 동시에 기재되어 있는데,<sup>40)</sup> 이듬해

36) 하지만 이 서목은 뒤로 가면 분류 기준이 무너지고 일관성이 없어진다. 전환기 도서정리의 혼란상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37) 金泰雄, 1995 앞의 논문, 185면.

38)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중국본에서는 많이 다르다. 당시 중국본 도서목록 중 카드번호가 수록된 『支那圖書臺帳』(奎26719), 『支那本圖書整理簿』(奎26726) 등을 보면, 번호가 조선판과는 달리 일본어 음순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다. 물론 애초에 『도서대장』에서 부여된 번호와 카드번호가 다르기는 하다. 하지만 번호 수정의 이유는 일본어 음순 때문이 아니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무언가 다른 것이었는데, 그 변경의 수준이 참사관분실에서 만든 체계 자체를 바꾸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본의 경우 새로 변경된 도서번호(곧 카드번호)에 따른 배열의 시작 도서가 『周易』류로서, 변경 이전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39) 그런데 염밀히 말하면 도서 전체가 일관되게 이로하 순서에 따라 번호가 매겨져 있지는 않다. 이는 장기적인 분류작업을 거치지 않고 그때그때 작업량을 설정한 가운데 일부 서가만 분류 정리한 뒤 번호를 곧바로 매기는 식의 작업 방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金泰雄, 1995 앞의 논문, 188면).

40) 이 서목의 특이한 점은, 도서의 배열 분서가 둘 중 어느 쪽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서목의 도서 배열은 현대적인 일본어 음순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우에오~(あい うえお~)’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이 시기 일본어 배열에 이로하와 더불어 현대적인 47음순 방식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중국본을 기재한 『支那圖書索引簿』(奎26724) 역시 마찬가지이다].

에 출간된 『朝鮮圖書臺帳』(奎26716)을 보면, 『朝鮮圖書索引簿』에 표기된 카드번호가 그대로 도서번호로 대체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규장각 청구기호의 기원이 되었다.<sup>41)</sup>

따라서 이렇게 도서번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서목들의 경우 대부분 분류체계가 없음은 불문가지이며, 계보·기록류 등과 같은 세부항목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보이니, 곧 도서번호의 후반부에 계보·기록류의 주된 기재 대상이었던 ‘조선왕실 관련 자료군’에 속하는 서적들이 위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1916년에 출간된 『朝鮮圖書臺帳』(奎26716)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총 8권의 서목 중 이전 7권까지는 經·史·子·集의 서적들이 섞여서 배열되다가 마지막 8권에 이르면 도서번호 기준으로 12719번부터 대략 14700번대 까지 거의 예외 없이 실록, 일기, 등록, 의궤류 등 기록물 중심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다.<sup>42)</sup> 이는 그만큼 일제가 이들 목록을 주시하기에 도서번호 배치의 체계가 잡히고 가장 마지막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도서번호의 부여가 일단락되자 참사관 분실에서는 새롭게 개편된 분류체계에 따라 다시금 도서를 배열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일차적으로 탄생한 것이 『朝鮮圖書部類目錄』(奎26714)과 『支那圖書部類目錄』(奎26713)이다.<sup>43)</sup> 이

41)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1917년에 간행된 『朝鮮圖書總目錄』(奎26778)에서 이러한 도서번호 분류체계의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金泰雄, 1995 앞의 논문, 186-187면). 하지만 그보다는 1년 전인 1916년에 나온 『朝鮮圖書臺帳』에서 번호체계는 완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조선도서총목록』은 표지에 ‘解題掛’라고 쓰여 있는 데서 알 수 있다시피 작성 목적 자체가 해제작업을 위한 목록이며, 이후에 나왔음에도 수록 도서는 오히려 『조선도서대장』보다 적다(『조선도서대장』은 도서번호 기준으로 15035번까지, 『조선도서총목록』은 15025번까지 수록). 아울러 이 목록은 조선본만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조선도서대장』의 경우 중국본 목록에 해당하는 『支那圖書臺帳』(奎26719)과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다.

42) 물론 가끔씩 예외도 있긴 하다. 후술하겠지만 개항기의 각종 기록류들 역시 간혹 이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 ‘기록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43) 정확한 작성 년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하지만 수록 도서번호가 1916년에 나온 『朝鮮圖書臺帳』보다 약간 적은 14663번까지라는 사실에서, 도서번호의 확정이 완료되는 1916년 전후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후 이들 목록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서적들을 기재하여 인쇄본으로 제작한 것이 바로 1921년 10월에 간행된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청구기호: 화한서분류 目 0440 2)으로서, 일제강점기 규장각도서 정리의 일단락을 지었다고 할 수 있는 서목이다. 이를 서목들에 나타나는 도서분류의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sup>44)</sup>

<표 3> 『朝鮮圖書部類目錄』·『支那圖書部類目錄』과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의 도서분류체계

四部	세부분류	四部	세부분류	四部	세부분류	四部	세부분류
經部	易	史部	正史	子部	儒家	別集	
	書		編年		道家		
	詩		紀事		釋家		
	禮		別史		兵家		
	春秋		野乘		農家		
	大學		政法		醫家		
	中庸		記錄		天文	總集	
	論語		地理		方術		
	孟子		金石		譯學		
	別經		傳記		類書		
	總經		系譜		隨錄	題評	
	字書		年表		藝術		
			目錄		小說		

44) <표 3>의 분류체계는 참사관 분실에서 처음 만든 시안과 비교하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다. 원안에 따른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類는 생략).

- ① 經部 - 易/書/詩/禮/春秋/大學/中庸/論語/孟子/別經/總經/經義/字彙
- ② 史部 - 正史/編年/記錄/紀事/別史/野乘/政法/地理/金石/傳記/系譜/雜錄/年表/目錄
- ③ 子部 - 儒家/道家/釋家/兵家/農家/醫家/天文/算數/譯學/類書/叢書/藝術/小說/雜書
- ④ 集部 - 別集/總集/修辭

\*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청구기호: 0500 70 1~3) 제1권의 <九. 分室事務進行順序> 중 ‘第一 図書ノ整理 - (二)部門別目錄ノ作成’ 참조.

분류항목의 체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확실히 취조국의 그것보다는 다소 복잡해졌으며, 물론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일정부분 그 이전의 『제실도서목록』 체제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고에서 주목의 대상이었던 史部의 계보·기록류는 각기 계보류와 기록류로 분리되어 전자는 史部의 제 11항목에, 후자는 제 7항목에 위치하게 된 점이 눈에 띈다. 항목만 훌어진 것이 아니라, 기재 내용상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즉 왕실과 관련된 이들 도서들이 일반 도서들과 뒤섞이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왕실 족보인 선원록의 경우 史部-系譜類 하에서 일반 가문들의 족보와 함께 기재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은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에서 왕실 족보와 관련된 자료들(『列聖王妃世譜』 등)이 일반 족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아울러 계보류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연대기류가 기록류에 잔존하지 않고 새로이 신설된 편년류에 편입되었다.<sup>45)</sup>

이는 결국 四部體制로 편입되었지만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으면서 특별 취급을 받던 ‘조선왕조·왕실관련 자료군’이 여러 항목으로 훌어지면서 해체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보·기록류 분류의 탄생과 기록류의 분리 및 구성내용 변화는 결국 왕실자료군의 일반도서 분류체제로의 편입 및 해체의 과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일제의 입장에서는 ‘청산 대상’이었던 조선왕조에 대한 부정 및 격하라는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sup>46)</sup>

45)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의 史部-編年類(9-10면) 참조.

46) 사실 왕조국가가 아닌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하더라도, 왕실관련 도서가 서목에서 특별히 취급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제의 도서분류는 외형상으로 볼 때는 근대화의 형태를 띤 도서관리의 체계화·합리화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보았듯이 계보·기록류의 탄생 과정에서 계보와 기록이라는 상호 이질적인 부류를 하나로 합쳤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때, 단순한 ‘체계화’ 이상의 의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림 3〉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의 史部-系譜類 중 일부

#### 4. 개항기~대한제국기 공문서류의 기록류 편집

기록류 분류는 이렇게 ‘조선왕실 자료구’와 연관되어 탄생했지만, 그 몸집을

본격적으로 불려나가게 만든 매개체는 개항기~대한제국기에 생산된 각종 문서들이었다. 대한제국의 공문서 목록으로는 앞서 언급한 『궁내부기록총목록』(그 중에서 특히 ‘公文類’ 항목)이 있지만 여기 수록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밖에 内閣 編錄課와 議政府 記錄課에서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류에 대한 목록인 『存案文蹟目錄』(奎26748)과 『書籍卷數目錄』(奎26749) 등이 있지만 이들로도 그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일제는 이들 행정문서들과 더불어 대한제국정부의 각종 收租成冊이나 회계장부 등을 점유하였고, 1908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정리작업을 시작하면서 문서철 표지에 분류도장을 찍는 등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이들을 분류·정리·평가하고 있었다.<sup>47)</sup>

따라서 적어도 이 시기에 일제는 이들을 도서가 아닌 문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이미 살펴보았다시피 취조국 분류체계 하의 史部-계보·기록류에서 『궁내부기록총목록』의 ‘공문류’ 항목에 기재된 서적이 제외된 테서도 유추할 수 있다. 적어도 애초에 계보·기록류를 만든 것은 어디까지나 ‘왕실관련 자료군’을 위해서였지 이들 문서류를 넣을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sup>48)</sup>

문제는 1916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前述하였다시피 도서번호 부여체계가 완성된 시점이었는데, 이 때 작성된 서목들에서 상기 문서류가 등장하기 시작한다.<sup>49)</sup> 이들은 대체로 ‘왕실관련 자료군’들의 번호 부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뒤부터 점차 서목에 편입되는 모습을 보인다. 일례로 『朝鮮圖書臺帳』(奎 26716)의 마지막 8권을 보면, 대체로 실록, 의궤 등으로 채워진 가운데, 도서번호 14600~14820, 14951~15035번을 각종 帳籍과 量案 등이 차지하고 있다.<sup>50)</sup> 이

47) 이상찬, 2013 앞의 논문, 370면.

48)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 문서류가 기재된 『奎章閣圖書引繼目錄』(奎26715)이 1912년 작성된 것이며, 따라서 그 이전에 일제가 개항기 관서문안류를 정리하고 도서번호의 부여까지 마쳤다고 파악했다(徐榮姬, 1994 앞의 논문, 113면).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규장각 청구기호와 일치하는 도서번호의 최초 부여 자체가 1914~1915년 이후이다. 그리고 『규장각도서인계목록』은 도서번호의 숫자나 正·複本 표기 등 여러 면으로 볼 때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이관 이후에 작성된 것이 확실하므로 이는 오류라고 생각된다.

49) 그 이전에 작성된 취조국 체제하의 서목들이나 『도서대장』 등에서는 이러한 개항기 공문서류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50) 帳籍과 量案은 대한제국 행정문서류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며, 취득 경로 역시 공문서류

령게 새롭게 규장각 서목에 편입되기 시작한 개항기 문서류는 도서분류체제가 개편되면서 계보·기록류가 해체됨에 따라 생겨난 기록류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었다. 그리하여 1921년 간행된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을 보면, 대략 15,000번대 이후부터 도서번호상 상한인 17296에 이르기까지의 서적들 중 대부분을 이들 문서류들이 ‘기록류’ 항목 하에 차지하고 있으며,<sup>51)</sup> 그 내용 역시 비단 장적, 양안뿐 아니라 각종 成冊이나 奏本, 存案 및 외국과의 조약문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부분을 망라하게 되었다.

개항기 공문서류의 보다 본격적인 기록류 편입은 1920년대 이후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규장각 도서의 관리권은 조선총독부 學務局을 거쳐 1920년대 말에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도서의 인계는 1928년 10월 29일부터 1930년 11월 29일까지 3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sup>52)</sup> 이 때 작성된 목록이 『保管轉換引繼圖書目錄』(奎26728)이다. 그 중 제3권을 보면 본래 대한제국 탁지부에서 관장하던 조세·재정 관련 문서들로 구성된 「原度支部番外整理引繼目錄」이 발견된다. 이는 경성제국대학으로의 규장각도서 이관 과정에서 개항기 공문서류가 이들, 그 중에서도 기록류에 편입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편입의 결과 도서이관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奎章閣圖書引繼目錄』(奎26715), 『奎章閣圖書番號順目錄』(奎26775), 『奎章閣朝鮮本圖書目錄』(奎26782), 『朝鮮圖書索引』(奎26776)<sup>53)</sup> 등에서는 도서번호의 상한이 19000번대까지 올라간다. 아울러 이들 추가분 대부분이 개항기 문서류로 채워지고 있음을 매한

와는 달리 취조국에서 시행하던 각종 수집 사업이었다. 『圖書受拂ニ關スル綴』(奎22156)을 보면 1915년 2월~1916년 11월 사이에 취조국에서 시행한 양안·장적 및 각종 고문서들에 대한 수집 사업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도 도서보다는 문서로 취급되는 것이 타당함은 마찬가지이다.

51) 물론 전부 다는 아니다. 간혹 이들 외의 도서들 역시 발견되는데 이는 참사관 분실의 도서수집 활동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렇게 추가된 서적들 중에서 주로 기록류 외의 것들이 기재된 목록으로는 『朝鮮圖書目錄補助簿』(奎26780)가 있다.

52) 金泰雄, 2008 앞의 논문, 169면.

53) 『조선도서색인』과 『支那圖書索引』(奎26769)은 1915년 경 만들어진 『조선도서색인부』 및 『지나도서색인부』와 마찬가지로 도서의 배열이 ‘아이우에오~(あいうえお~)’의 현대적 인 일본어 음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검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가지이다.

이러한 공문서류의 인계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일부 발견할 수 있다. 즉 조선총독부 보유도서 중 서양서나 일본서 등 규장각도서 이외의 책들에 대한 목록으로 『朝鮮總督府圖書目錄』이 있다. 이 책은 1911년에 처음 발간된 이래 1924년·1927년·1930년·1933년·1936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보되었다. 이들의 목차를 살펴보면 ‘朝鮮官公衙刊行書’, ‘韓國政府刊行書’ 등과 같은 명칭의 분류들이 보인다. 이 항목을 구성하는 도서들 중 일부가 개항기 공문서류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 책의 1939년 개정판에는 상기 항목이 사라진다. 이는 이들 도서가 총독부 소장 도서목록의 등재 대상이 아님을, 다시 말해 더 이상 총독부의 관리 대상이 아님을 암시한다. 곧 규장각도서의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이관 결과 이들이 경성제국대학 관리 하의 규장각도서로 편입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문서류의 규장각도서 편입을 정리하는 최종적인 결과물로 간행된 서목이 바로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補遺』(1934년 10월 간행)이다. 이 서목은 구성이 대단히 특이하다. 구성 체계 자체는 朝鮮圖書와 支那圖書에 日本圖書가 추가된 외에는 1921년의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과 거의 유사하게 經·史·子·集 하의 세부 분류로 구성되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다. 支那·日本圖書는 각기 1쪽씩에 종수도 다 합쳐서 전자는 9종, 후자는 15종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량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기재 내용 대다수는 조선도서에 집중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史部-記錄類에 99% 이상의 기재 대상이 몰려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sup>54)</sup> 따라서 이 서목의 간행 목적은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의 간행 이후 수집된 개항기 공문서류를 규장각 도서체계, 그것도 기록류 항목에 편입시키기 위함에 다름 아닌 것이다.

결국 일제하 규장각 서목의 기록류 분류는 조선왕조·왕실 관련 자료군을 도서분류체계 내에 편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부-계보기록류의 제정으로 출발하여, 계보와 기록이 나뉘어 일반 자료와 뒤섞이며 왕실자료군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독립하였고, 일제가 무원칙하게 행한 개항기 공문서류의 규장각도서 편입 과정에서 그 규모가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초래한

54) 이 서목의 보다 구체적인 도서 기재 상황은 뒤에 나오는 〈표 4〉 참조.

결과는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과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보유』에 수록된 도서들의 분류별 건수를 나열한 다음의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과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보유』의 부류별 수록 도서 건수\*

部 類	書目 종류**	『고도서』(1921)			『보유』(1934)				합계			
		朝	支	소계	朝	支	日	소계	朝	支	日	소계
經	易	22	46	68	0	0	0	0	22	46	0	68
	書	14	23	37	0	1	0	1	14	24	0	38
	詩	6	27	33	0	1	0	1	6	28	0	34
	禮	73	50	123	0	1	0	1	73	51	0	124
	春秋	11	32	43	0	0	0	0	11	32	0	43
	大學	12	7	19	0	1	0	1	12	8	0	20
	中庸	8	3	11	0	0	0	0	8	3	0	11
	論語	5	9	14	0	0	0	0	5	9	0	14
	孟子	7	9	16	0	0	0	0	7	9	0	16
	別經	6	15	21	0	0	1	1	6	15	1	22
	總經	16	86	102	0	1	0	1	16	87	0	103
	字書	13	87	100	0	0	0	0	13	87	0	100
	소계	193	394	587	0	5	1	6	193	399	1	593
史	正史	2	42	44	0	0	0	0	2	42	0	44
	編年	67	27	94	0	1	0	1	67	28	0	95
	紀事	85	38	123	0	0	0	0	85	38	0	123
	別史	78	111	189	2	0	0	2	80	111	0	191
	野乘	27	7	34	0	0	0	0	27	7	0	34
	政法	332	194	526	2	2	0	4	334	196	0	530
	記錄	3111	12	3123	1912	0	0	1912	5023	12	0	5035
	地理	985	95	1080	2	1	1	4	987	96	1	1084
	金石	242	44	186	0	0	2	2	242	44	2	188
	傳記	253	60	313	1	0	0	1	254	60	0	314
	系譜	343	9	352	0	0	0	0	343	9	0	352
	年表	12	12	24	0	0	0	0	12	12	0	24
	目錄	37	11	48	0	0	0	0	37	11	0	48
	소계	5574	662	6236	1919	4	3	1926	7493	666	3	8162

	儒家	135	125	260	0	0	0	0	135	125	0	260
	道家	11	32	43	0	0	0	0	11	32	0	43
	釋家	60	69	129	0	0	0	0	60	69	0	129
	兵家	32	72	104	0	0	2	2	32	72	2	106
	農家	9	4	13	0	0	0	0	9	4	0	13
	醫家	21	75	96	0	0	0	0	21	75	0	96
	天文	59	134	193	0	0	0	0	59	134	0	193
子	方術	25	30	55	1	0	0	1	26	30	0	56
	譯學	26	15	41	0	0	1	1	26	15	1	42
	類書	55	201	256	0	0	1	1	55	201	1	257
	隨錄	61	62	123	1	0	0	1	62	62	0	124
	藝術	96	220	316	1	1	6	8	97	221	6	324
	小說	21	133	154	0	0	0	0	21	133	0	154
	소계	611	1172	1783	3	1	10	14	611	1172	10	1783
	別集	1071	514	1585	0	0	1	1	1071	514	1	1586
集	總集	171	173	344	0	0	0	0	171	173	0	344
	題評	11	15	26	0	0	0	0	11	15	0	26
	詞曲	13	8	21	0	0	0	0	13	8	0	21
	功令	58	209	267	0	0	0	0	58	209	0	267
	소계	1324	919	2243	0	0	1	1	1324	919	1	2244
	총계	7702	3147	10849	1922	10	15	1947	9624	3157	10	12796

\*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1921)과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보유』(1934)에 수록된 도서들의 건수를 정리한 것으로, 같은 서명을 가진 책이 도서번호를 달리하여 여러 권 존재하더라도 하나의 건으로 서목에 기재되어 있으면 1건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실제 도서의 분포 수량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경향을 이해함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 약어사용 범례: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 → 『고도서』,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보유』 → 『보유』, 조선본 도서 → 朝, 중국본 도서 → 支, 일본 도서 → 日

위의 표에서 살펴보면 조선본 도서 중 史部의 기록류는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에 3111건,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보유』에 1912건으로 도합 5023건이나 된다. 이들을 전체 건수와 비교한 비율을 생각해본다면,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만을 따져볼 경우(3111건으로 계산) 전체(10849건) 중에서는 28.68%, 그 중 조선본 도서(7702) 중에서는 40.39%를 차지한다. 수록 도서의 대부분이 조선본 기록류

인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보유』를 합칠 경우(5023건으로 계산) 그 비율은 더욱 올라가서, 전체(12796건) 중에서는 39.25%, 조선 도서만 따져볼 경우(9624건)에는 무려 52.19%를 차지하게 된다. 조선본 도서로 서목에 수록된 책들이 속한 43개 분류항목 중 단 1개의 항목에 기재된 책의 숫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이다.

이렇게 공룡 같은 존재가 되고 만 ‘기록류’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해방이 되고 서야 시도되었다. 해방 이후 규장각도서의 정리와 목록 작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였다. 그 이전인 50년대에 작성된 서목으로 귀중본 도서목록인 『朝鮮圖書部類目錄』(奎26794)이<sup>55)</sup>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같은 제목의 (奎26714) 본 중에서 귀중도서를 추린 것에 불과하다. 당연히 체제 역시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과 동일하다. 규장각도서를 이관 받은 서울대학교에서는 1962년 11월 25일자로 중앙도서관 내에 ‘규장각도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규장각 도서의 활용을 위해 1962~1963년에 걸쳐 긴급히 『奎章閣朝鮮本目錄』(奎26795, 총 4책) 및 『奎章閣中國本目錄』(奎26772, 1책)을 필사본으로 간행하였고, 이후 1964년에는 정리가 이루어진 한국본 도서를 대상으로 한 목록인 『奎章閣圖書目錄』을 등사본으로 간행했다.<sup>56)</sup> 이들 목록들은 최초로 한국어의 가나다 순으로 서명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도서의 검색과 활용에 있어서 매우 유용했지만, 음운 순으로 정리한 관계로 분류체계의 개정과는 무관했다.

도서분류체계의 개편은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學 부설 東亞文化研究所에서 하버드·옌칭 연구소의 자금 지원을 얻어 규장각 도서의 목록카드를 제작한 뒤 도서 재분류를 거쳐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1965)을 인쇄본으로 간행하면서 이루어졌다.<sup>57)</sup> 史部의 경우 이때의 분류 작업에서 기록류 항목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55) 서목의 앞부분에 있는 법례를 통해 작성 시기가 1955년 7월이고 작성자는 1975년에 규장각 초대 도서관리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사서 柳東烈임을 알 수 있다.

56)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上)』(1981, 서울大學校 圖書館),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解題」, p.XII. 단 여기에서는 이들 서목들의 서명을 각기 『奎章閣圖書韓國本書名索引』 및 『奎章閣圖書中國本書名索引』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렇게 표기된 경우도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필사본을 한 부가 아니라 여러 부 제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방대한 개항기 정부기록물을 ‘存案類’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편입시켰다. 그 밖에도 기존의 기록류들은 ‘政法類’나 ‘詔令·奏議類’ 등으로 분산되었는데,<sup>58)</sup> 기록물의 특성상 발수신자로 구분해야 그 특성이 잘 드러나는 관계로 존안류라는 史部 하의 주제별 분류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1981년 그때까지 남아있던 미정리도서를 모두 정리 완료하면서 새롭게 개정하여 만든 목록인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上·下(1981, 서울大學校 圖書館)에서는 존안류 휘하의 기록물들을 정법류 하에 ‘官署文案’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만든 뒤, 다시 그 밑에 접수·편철 기관별로 하위분류를 만들어 각기 분산시켰다. 이는 이전의 목록화 작업에서 이루어진 주제별 분류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록물의 사료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였다.<sup>59)</sup>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는 염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經·史·子·集 중 史部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문제이다. 즉 기록류가 없어져도 그 내용물들이 여전히 史部 내에 남게 되어 史部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史部 아래의 하부분류 중 정법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대해져서 史部의 60% 이상을 차지함은 물론, 하부구조가 經·子·集部의 경우 部-類-門의 3단계인데 비해, 史部, 특히 정법류의 경우 5단계가 일반적이고 度支門 같은 경우 6단계의 하부구조를 보여주는 등 지나치게 복잡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분류의 효과가 무색해지고 자료들의 상호관계 파악이 어려워져서 목록으로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sup>60)</sup> 이는 일제 강점기 서목의 ‘기록류’가 남긴 부정적 유산이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상태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57) 위의 글, p.XII.

58) 1965년 작업시 정해졌던 史部 하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김태웅, 2007 앞의 논문, 245면의 〈표 2〉 참조.

59) 김태웅, 2007 위의 논문, 244면. 참고로 분류체계 개편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奎章閣所藏高宗時代公文書始改正目錄』(2009, 태학사)의 간행을 들 수 있다.

60) 이상찬, 2013 앞의 논문, 371-374면.

## 5. 맷음말

이상에서 규장각도서의 분류체계 중에서 현재는 사라지고 없는 史部 하의 ‘기록류’라는 항목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과정을 몇 가지 중요한 서목들에 대해 살피면서 추적해보았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병합 이후 규장각 도서를 인계받은 조선총독부 취조국에서는 1912년 3월 경에 새로운 도서분류체계를 만들고 그 결과물로 『書籍目錄臺帳』을 위시한 서목들을 제작하였다. 신규 체제는 經·史·子·集의 분류를 유지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분류에 비해 단순화되었고, 史部 아래에 ‘系譜·記錄類’라는 항목이 신설되었다. 이 항목은 전통시대에는 아예 서목에 등재되지 않거나 四部 분류와는 별도로 취급되던 선원록, 의궤, 실록 등 조선왕조·왕실관련 자료들을 한데 묶어 四部體制 속에 편입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규장각도서의 관리 책임이 취조국에서 참사관 분실로 넘어가면서 분류체계 역시 재변경되었다. 참사관 분실에서는 규장각도서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도서카드를 작성하면서 도서번호를 부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21년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을 간행하여 규장각도서의 목록작업을 일단락 지었다. 여기에서 계보와 기록이 분리되면서 왕실자료들이 일반자료들과 섞이게 되었고 연대기 자료들이 편년류 항목으로 이동하였다. 그 결과 취조국 체제하에서는 ‘계보·기록류’라는 명칭하에 특별취급을 받았던 ‘조선왕조·왕실관련 자료군’이 해체되었다. 따라서 계보·기록류 분류의 탄생과 기록류의 분리 및 구성내용 변화는 결국 왕실자료군의 일반도서 분류체제로의 편입 및 해체의 과정이며, 결과적으로 조선왕조에 대한 부정·격하라는 식민통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사부-기록류 분류는 개항기~대한제국기에 생산된 각종 문서들이 편입되면서 그 분량이 비대해졌다. 애초에 일제가 ‘계보·기록류’를 신설할 때에는 이들을 포함시킬 의도가 없었으나, 도서번호 부여체계가 완성된 1916년경부터 개항기의 量案이나 帳籍 및 각종 成冊들과 더불어 奏本·存案 등의 공문서류가 도서번호 15000번을 전후하여 서목에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이

러한 흐름은 규장각도서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되면서 가속화되었으며, 그 결과 '기록류'는 단일 항목으로는 지나치게 비중이 커져버렸다. 해방 이후 이 분류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규장각 도서목록 내에서 史部 및 政法類가 차지하는 과다한 비중으로부터 그 잔영을 느낄 수 있다.

주제어 : 서목, 규장각, 계보·기록류, 조선왕조, 조선왕실, 식민통치, 기록류,  
도서분류체계

투고일(2015. 5. 14), 심사시작일(2015. 5. 20), 심사완료일(2015. 6. 8)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category of record(記錄類)’ in the catalogues of books from Kyujanggak Archive produc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Min Hoi Soo \*

A new book cataloguing method was made for the books of Kyujanggak Archive by colonial Chosun Government-General in March 1912. It maintained traditional four division(四部) system[i.e., Classics(經), Histories(史), Philosophy(子) and Belles lettres (集)], and a new specific category of “genealogy and record(系譜·記錄類)” was set under that of Histories. This was for inserting the books on Chosun Dynasty and royal family[e.g. royal family record(璿源錄), record of royal protocols(*Uigwe*, 儀軌), and annals of dynasty(王朝實錄), etc.], traditionally excluded from catalogues of books, into four division system.

Later the division system changed again, and as a result, the ‘category of genealogy and record’ was split into ‘category of genealogy’ and ‘category of record’, causing mix of the royal and ordinary books. This means dissolving the group of the books on Chosun Dynasty and royal family in book division system, implying a part of colonization through degrading Chosun Dynasty. And the category of record became too huge by combining official documents produced by Korean Empire, leaving the problem of imbalance in book division system of Kyujanggak Archive that has not been solved clearly yet.

**Key Words :** catalogue of books, Kyujanggak Archive, genealogy and record, Chosun Dynasty, royal family, colonization, category of Record, book division system

---

\* Senior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